

「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)

-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에 따라 운영비등 보조금 지원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4호 중 “육성·발전”을 “운영 및 육성·발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